

의안번호	2212934
의 퇴 인	백승아 의원
회 답 일	2025.11.21.
추계번호	25C513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1항)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u>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u>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 (교육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소관 사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22년 설치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수행함
 - － 위원회는 출범 이후 의견 수렴, 대학입시제도 개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을 의제로 총 6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위원회 산하에 교육연구센터가 직접 설치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외부 기관 지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연구센터가 존재하여 신규 연구센터 설치에 따른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

-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¹⁾²⁾ 현재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구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 연구센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년 지정된 이후 '25년 유효기간이 연장됨
 -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의견수렴, 계획 이행 관리·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며 '23년 4억원, '25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 모니터링단 운영, 관계기관 실무 협의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며 '23년 6억원, '25년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연구센터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이 존재하여 재정지출의 증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개정안의 조항은 재량규정이므로 위원회가 현행 지정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 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또한, 현시점에서 위원회가 직접 설치·운영할 교육연구센터의 규모 및 수행 업무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이외에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서 교육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정수를 1명 확대함
 - 해당 위원이 외부 인사인 경우 매년 6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기존 예산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³⁾

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및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등을 교육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연구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 참고로, 현행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등임⁴⁾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3) 회의 참석 비용(20만원)에 회의 횟수(3회)를 곱하여 추계

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차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